

(2023학년도 제5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3. 5. 4.(목), 14:10
- 장소: 기획예산팀 회의실(본관 1층)
- 심의 안건

1.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관한 건(대학원 교학팀)
2. 「직제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대학원 교학팀)
3. 「직제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교원인사팀)
4.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원격교육지원센터)
5.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원격교육지원센터)
6.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학생복지팀)
7.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기획예산팀)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해당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학과 신설(석사과정) -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분야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을 통해 기업과 대학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으로 수소모빌리티석사과정 신설 2. 일반대학원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석·박사과정) - 장애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함양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놀이심리재활) 전문가 양성 3. 일반대학원 스포츠복지교육학과 학위종별 변경 - 전공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변경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개정(안)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신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 • 제39조(학위수여) [별표2] 학위종별 개정(안) -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석사학위과정 ‘공학석사’ 신설 - 일반대학원 놀이심리재활학과 석사학위과정 ‘놀이심리재활학석사’ 신설 - 일반대학원 놀이심리재활학과 박사학위과정 ‘문학박사’ 신설 - 일반대학원 스포츠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 교육학 석사 → (변경) 스포츠복지교육학 석사 - 일반대학원 스포츠복지학과 박사학위과정 교육학 박사 → (변경) 스포츠복지교육학 석사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입안예고공청회: 2023. 4.19(수) - 전자공청회: 2023. 4. 14.(금) ~ 4. 19.(수) 12:00까지		
	다. 의견제출 유무	특이사항 없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특이사항 없음		
첨부자료	1. 규정입안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1부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변경 2002.2.15., 2004.1.15) 1. 교육부장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0.3.3.)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삭제 (2006.8.4.)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00.00.) ②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제39조(학위수여) ①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와 학위청구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변경 2003.4.30., 2003.6.4) (개정 2006.11.6., 2014.11.27., 2017.3.31., 2018.4.6.)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③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18.4.6.) ④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학위수여) ①(현행과 같음) ②각 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종별은 별표2와 같으며, 학위의 수여는 학위기(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6호)로써 행한다. (개정 2008.6.5, 2010.3.3,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6., 2018.6.25.,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00.00.) ③~④(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육학과	70명	교육학과	40명	인문 사회	교육학과	70명	교육학과	40명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			국제비즈니스학과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			심리학과		-	
	-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과	
	-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			유아특수교육학과		-	
	예술경영학과		-			예술경영학과		-	
	-		(신설)			-		놀이심리재활학과	
자연 과학	약학과	70명	약학과	40명	자연 과학	약학과	70명	약학과	40명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			간호학과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직업재활학과		-			직업재활학과		-	
	작업치료학과		-			작업치료학과		-	
공학	물리치료학과	70명	-	40명	공학	물리치료학과	70명	-	40명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경건설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조경건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의학	-	70명	(신설)	40명	의학	(신설)	70명	-	40명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			스포츠의학과		-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70명	스포츠과학과	40명	예체능	스포츠과학과	70명	스포츠과학과	40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계	29개 학과	70명	21개 학과	40명	계	30개 학과	70명	22개 학과	40명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2】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별표 2】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계 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인문 사회	국 어 국 문 학 과	-	문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국 제 비 즈 니 스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심리운동학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과	심리학석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글로벌외식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과	-	관광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	사회적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학석사	소방방재학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석사	스포츠복지교육학박사
자연 과학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자연 과학	국제교육문화학과	-	교육학박사 문학박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신설)	(신설)	(신설)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석사	문학박사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명과학과	이 학 석 사	-		생명과학과	이 학 석 사	-
	식품생명공학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식품생명공학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간 호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직 업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직 업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공학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공학	작업치료학과	이학석사	-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전기전자공학과	공 학 석 사	-		전기전자공학과	공 학 석 사	-
	에너지전기공학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에너지전기공학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동아시아조경학과	공학석사	-
	컴퓨터공학과	공 학 석 사	-		컴퓨터공학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조경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조경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학박사
	제약공학과	공학석사	-		제약공학과	공학석사	-
	제약화장품공학과	-	공학박사		제약화장품공학과	-	공학박사
예체능	재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	재난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신설)	(신설)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공학석사	-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국 악 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국 악 과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예체능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석사		예체능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석사	
	태권도학과	체육학(태권도전공)석사	체육학박사		태권도학과	체육학(태권도전공)석사	체육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석사	스포츠과학박사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대학원 교학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1.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 학과 신설(석사과정) -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 분야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을 통해 기업과 대학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으로 수소모빌리티 석사과정 신설하고자 함 2. 일반대학원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석·박사과정) - 장애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적 함양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놀이심리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6조(기구표) [별표] 개정(안)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신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 -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놀이심리재활학과’ 신설		
기대효과	•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 「직제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입안예고공청회: 2023. 4.19(수) - 전자공청회: 2023. 4. 14.(금) ~ 4. 19.(수) 12:00까지	
	다. 의견제출 유무	특이사항 없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특이사항 없음	
첨부자료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3.00.00.)
(신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3. . .))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기구표)

총 장											
대학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기획처	기획예산팀									
대학원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단과대학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교학팀										
부속기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과학과, (학과 신설) 〈박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글로벌외상경험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경제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조경간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학과 신설)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학군단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대학본부	보건복지대학	작업치료학과, 제약공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재활상담학과, 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문화사회대학	군사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경영학부									
대학원	과학기술대학	전기자동차공학부, 조경학과									
	식품과학대학	호텔외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단과대학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부속기관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한의학대학	한의학예과, 한의학과									
학군단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양대학	교양교육지원센터									
대학본부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포츠관광융합전공, 영유아발달치료융합전공, 건강기능식품융합전공, 임상운동관리융합전공, 응급위기관리융합전공									
부속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문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학군단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근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교학연구소									
	부속연구기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안)(기구표)

개 정(안)(기구표)

총 장

총장
직속

비서실

LINC3.0
사업단

특성화
추진단

대학
일자리
본부

교육혁신본부
IR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역량개발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국제교류원
글로벌교육지원센터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공직아카데미

창업지원단
창업교육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새만금
연구단

혁신
사업단

안전
센터

홍보실

대학
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대학원

교학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국제비즈니스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리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과정), 직업재활학과, 작업치료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예술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과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박사과정〉
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운동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글로벌및신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사회정책경영학과, 소방방재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약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약학과, 조경건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소방 안전공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과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경영문화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가족복지학과, 미술치료학과, 다문화학과, 외식경영학과, 미용경영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응용행동분석학과, ESG경영학과

국방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심리학과, 공공금융정책학과

진천부총장

대학본부

학사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예비군중대

산학협력부총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신센터

대학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난안전공학과

경영문화대학원

간호도시조경통상심리
상담심리학과

단과대학

문화사회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기술대학

간호도시조경통상심리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체육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부속기관

부속지원기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우석대의료원, 체육부, 종합실습장, 출판부, 도서관, 정보통신센터, 생활관, 전주한방문화센터, 보건진료센터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부속어린이집, 교육연수원, 발달장애아차로교육원, 우영관, 공학교육혁신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이버평생교육원

부속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소, 아동복지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새만금연구소, 공학연구소, 다문화센터, 인지과학연구소, 태권도연구소, 김군태연구소,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스마트융합라이프케어연구소, 문화예술교육연구소, ESG국가정책연구소, 정원고고학연구소

학군단

진천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대학 본부	학사지원센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 연구지원실 취업역량개발센터 창업역량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특성화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센터 지역혁신센터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	
	행정지원센터		
대학원	예비군중대		
단과 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 생명의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공학과 재·인간공학과	
	경영문화대학원	〈박사과정〉 에너지전기공학과 재·인간공학과	
단과 대학	문화사회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군사안보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패션스타일링학과, 소방행정학과, 경찰학과	
	과학기술대학	건강안전관리학과, 생명의학과, 컴퓨터공학부, 군사기술학과	
단과 대학	체육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자율전공대학	자율전공학부(전주)	
단과 대학	〈융합학부〉	스마트재난안전융합전공,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소방안전빅데이터융합전공, K-뷰티바이오비즈니스융합전공, e스포츠융합전공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기획예산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약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평가·인증 관련 학과에 ‘약학’ 추가		
관련근거 (관계법령)	•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1호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평가·인증을 받는 학과에 ‘약학’ 을 추가하여 약학대학 학장의 업무 총괄 및 소속 교원 지휘 감독 권한 부여		
기대효과	• 약학교육 평가인증 업무 수행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 「직제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입안예고공청회: 2023. 5.4.(목) - 전자공청회: 2023.4.28.(금) ~ 5.4.(목) 12:00까지	
	다. 의견제출 유무	특이사항 없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특이사항 없음	
첨부자료	1.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사법 제3조 1부. 3. 약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3조(대학원장,학장)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단과 대학에 학장을 둔다. (개정 2018.12.6.)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8.12.6.)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대학원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3.31., 2018.12.6., 2022.12.28.) ④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따라 <u>한의학</u> 또는 <u>간호학</u>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는 각 학과(부)의 학장은 소속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12.28.)	제13조(대학원장,학장)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단과 대학에 학장을 둔다. (개정 2018.12.6.)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8.12.6.)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대학원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3.31., 2018.12.6., 2022.12.28.) ④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따라 <u>한의학, 간호학 또는 약학</u>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는 각 학과(부)의 학장은 소속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12.28.)
(신설)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000(2023.00.00)호)</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관련부서	해당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원격수업 관련 수업 동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목의 수업 질 관리 사항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따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내 원격수업의 질 관리 제반 사항을 규명하고 있어, 제6조(위원회의 기능) 중 1호를 삭제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 기능에 신설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제6조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기능(2021.2.15. 교육부 훈령 제367호)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안) - 제1호: 원격수업의 개설과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기능으로 변경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사항에서는 삭제		
기대효과	• 원격수업의 개설과 질 관리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심의 기능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원격수업의 개설과 질 관리에 관한 사항</u> 2.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의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삭제></u>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의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2. 15.] [교육부훈령 제367호, 2021. 2. 15., 제정.]

교육부(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학칙 등 규정사항)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
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4.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
7.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제4조(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일반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내·외 일반대학과 공동으로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학이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5조(강의 평가)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원격수업 관리위원회) ①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일반대학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7조(원격교육지원센터) 일반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제8조(시설 및 설비)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적용제외) 이 훈령 제정 이전에 특정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약, 교육부의 승인 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67호,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원격수업관리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u>교육</u> 계획 및 <u>기획</u>에 대한 사항 2. <u>원격교육 강좌 품질</u> 관리에 대한 사항 <u>(호 신설)</u> 3. 그 밖에 원격수업 <u>질</u>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u>수업</u> 계획 및 <u>운영</u>에 관한 사항 2. <u>원격수업의 개설편</u> 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u>원격수업 인증에 관한 사항</u> 4. 기타 원격수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4-1-7-규칙1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평생교육지원 대상자 신입생 모집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절차 간소화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장학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제6조(입학드림장학금) 개정안)		
기대효과	• 신속한 사전감면을 통한 등록률 향상 및 신입생 입학자원 확보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입학드림장학금) 입학홍보, 평생교육지원 등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u>장학위원회의 심의 후</u>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1.2.25., 2011.12.19., 2013.2.1., 2013.12.5., 2016.7.28., 2022.2.18., <u>2023.1.30.</u>) [본조 개정 2022.2.18.]	제6조(입학드림장학금) 입학홍보, 평생교육지원 등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처장의 추천으로(<u>단서 삭제</u>)총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1.2.25., 2011.12.19., 2013.2.1., 2013.12.5., 2016.7.28., 2022.2.18., 2023.1.30.) [본조 개정 2022.2.18.]
<u>(신설)</u>	<u>부 칙</u> <u>이 시행규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규정류관리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시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해 입안예고 및 공청회를 시행하여 절차를 개선하여 기 시행함 - 관련: 규정류 제·개정시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시행 계획 마련(기획평가팀-327 2020.02.22.))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명료화 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규정류 제·개정시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시행 계획(기획평가팀-327 2020.02.22.)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8조2(입안예고) 조 신설 -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시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해 입안예고 및 공청회를 시행 - 주요내용: 입안예고 및 공청회, 예외 사항의 경우 등 • 제9조(심의) 제1항 - 입안예고 및 공청회 내용 추가			
기대효과	• 대학 구성원에게 충실한 정보제공 및 참여·소통 활성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규정류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1 절 규정의 제 · 개정	제 1 절 규정의 제 · 개정
제7조(입안) ①규정의 제 · 개정(안)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되,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획처장은 규정의 제 ·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기획처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출) ①소관부서장이 규정을 제 ·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 · 개정(안)을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안된 제 · 개정(안)이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 ·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 신설) 제9조(심의) ①기획처장은 <u>제·개정(안)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u>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규정심의위원회는 제 · 개정(안)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에게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제 · 개정(안)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기획처장이 소관부서에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입안) ①~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u>제8조2(입안예고) ①기획처장은 제 · 개정(안)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 입안 사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교내 포털시스템 또는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안예고하여야 하며, 직제 및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조회 및 정보제공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긴급히 입안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안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상위의 규정류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의 경우 <u>②입안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u> 제9조(심의) ①기획처장은 <u>접수된 제 · 개정(안)과 공청회 의견을</u>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10조(확정 및 공고) ①기획처장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제·개정(안)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제·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며, 총장은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제·개정(안)은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1. 직제에 관한 규정 2. 교직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규정 3. 교비에 의한 예산회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 ④기획처장은 확정된 제·개정(안)을 즉시 게시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확정 및 공고) ①~③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우 석 대 학 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규정류 제·개정시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시행 계획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 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및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목적 및 방향

-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 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 사전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 개선

☐ 개선 계획

- 절차 개선(안)



- 의견수렴(안)

방법	입안예고공청회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3일전에 대학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안내 ·기획처에서 시행
	입안예고전자공청회 (온라인)	·대학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가칭)'규정입안공청회' 게시판 개설 ·로그인시에만 게시글 상세내용 열람하도록 기능 설정 (일반인도 회원 가입시 열람 가능) ·의견 게시는 게시판 '댓글'이용
대상규정		·「우석대학교 학칙」, 「직제규정」
항후진행		·「규정류관리규정」 개정 추진

☐ 기대효과

- 대학 구성원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 사전 의견청취 절차 마련으로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 특정 구성원간의 대립된 의견의 조정

붙임 규정류 제·개정·폐지 절차 개선 계획 1부, 끝.

인감 최현규 인장 송대우 기획처장 김찬영 부총장 서지은 총장직무대 02/22
서지은

발조자

시행 기획결가필-827 (2020.02.22.) 접수 ()

접수

우 663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 http://www.woosuk.ac.kr

전화 063-290-1705 /전송 063)290-1044 / ilnc10@woosuk.ac.kr / 공개